

□ 본교 여비(출장비) 규정

1. 출장비(여비) 지급 구분표

1호	총장
2호	부총장
3호	대학원장, 처·실장, 대학장, 부처장
4호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5호	제1호~제4호 이외의 교직원 및 연구원

2. 국내 출장비(여비) 지급표

구분	항공 운임	철도 운임	버스 운임	선박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1호	Business	KTX특실	우등	정액	15,000원	25,000원	100,000원	30,000원
2호	Economy	KTX특실	우등	정액	15,000원	25,000원	100,000원	30,000원
3호	Economy	KTX특실	우등	정액	15,000원	25,000원	100,000원	30,000원
4호	Economy	KTX	우등	정액	15,000원	25,000원	100,000원	30,000원
5호	Economy	KTX	우등	정액	15,000원	25,000원	100,000원	30,000원

- ※ 공동연구원 중 타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4호를 적용함.
-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 서울, 경인지역 출장의 경우 서울 10,000원, 경인 2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현지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음.
- ※ 수로여행 시, 3호 이상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 해당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
- ※ 학회 개최 장소 및 학회 지정 숙박장소에서 투숙할 경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입증서류 제출 필수)

3. 국외 출장비(여비) 지급

- ※ 공동연구원 중 타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4호를 적용함.
-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 출장일수 가산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 연구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규정은 불인정
 나. 「가톨릭대학교 여비규정 제7조 4항」 - 출장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일수가 추가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일수에 가산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출장일수 가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함.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운임
1호	가	60	387 이내 실비	186	Business
	나	60	307 이내 실비	136	Business
	다	60	233 이내 실비	102	Business
	라	60	164 이내 실비	85	Business
2호	가	50	290 이내 실비	160	Business
	나	50	220 이내 실비	117	Business
	다	50	176 이내 실비	87	Business
	라	50	145 이내 실비	73	Business
3호	가	40	282 이내 실비	133	Economy
	나	40	207 이내 실비	99	Economy
	다	40	162 이내 실비	72	Economy
	라	40	108 이내 실비	61	Economy
4호	가	35	223 이내 실비	107	Economy
	나	35	160 이내 실비	78	Economy
	다	35	130 이내 실비	58	Economy
	라	35	85 이내 실비	49	Economy
5호	가	26	155 이내 실비	67	Economy
	나	26	123 이내 실비	49	Economy
	다	26	90 이내 실비	37	Economy
	라	26	77 이내 실비	30	Economy

- ※ 국외여비의 환율은 신청일 기준 고시환율(KEB하나은행 1회차 매매 기준율)을 적용함.
- ※ 항공운임의 경우 8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직항) 혹은 신체적, 특수성이나 질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Business를 허용할 수 있음(단, 추가 비용은 교비가 아니어야 함).
- ※ 항공운임 정산 시 항공권 구입 영수증, invoice 원본을 제출하고, 이를 확인한 후 실비 정산
- ※ 숙박비는 실비를 정산처리 하여야 함.
-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은 출장비 정산 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고, 이를 확인한 후 실비 정산처리 함.
- ※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 외 국제협력 업무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장거리 또는 장시간의 현지교통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실비로 정산 할 수 있음.

<지역별 등급 구분 표>

등급	지역	국 가
'가'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일본,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카주	미국, 캐나다
	유럽주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나'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중국, 타이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헝가리, 러시아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함.